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북)상주농업협동조합

2. 조치일 : 2025. 6. 4.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감리업무 실효성 제고 필요

내규「상호금융 리스크관리 업무방법」제10장 제1절 제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조합은 여신규모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1인 이상의 여신감리역을 선정하여, 여신심사·사후관리·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여신감리역은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되, 조합의 여신규모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신규·수시 여신감리, 정기 여신감리를 구분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주농업협동조합은 여신감리역 1인(감사실 과장 1명)이 조합의 정기·수시감리 및 여신 사후 모니터링 업무를 감사업무 및 준법감시인 업무와 겸직하여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어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

또한, 여신감리 점검결과를 증빙서류 없이 형식적으로 '적정'으로 분류하여 해당 영업팀에 통보하는 등 여신건전성 및 신용리스크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상주농업협동조합은 조합의 여신규모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여신감리인력을 충원하고, 과도한 겸직을 해소하는 한편, 여신감리 점검결과 통보 시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하고 관리자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 개선을 통해 여신감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체 채무조정의 심의 관련 내부통제 강화

내규「여신업무방법」제3편 제4장 제4절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취약차주 지원, 이자감면 및 이자 상환유예를 포함한 채무조정 제도 지원 여부 결정시 채권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 본절에 따른 채무조정제도 지원 시에는 채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무조정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그러나 상주농업협동조합은 취약차주 지원의 경우에만 채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이자감면, 이자 상환유예 대상 결정 시에는 채권관리위원회 의결 없이 상임이사 전결로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상주농업협동조합은 내규를 정비*하여 이자감면, 이자 상환유예를 포함한 모든 자체 채무조정 제도 지원시 채권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업무방법 외 채권관리업무방법 등에도 채무조정 제도를 별개로 규정하여 내규 사이 채무조정의 유형·조건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바, 여신업무방법상 채무조정 방식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이 바람직

(3) 부실PF 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내규「여신업무방법」제2편 제2장 제7절 제15조에 의하면 조합은 PF대출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주농업협동조합은 부실우려 사업장인 ㈜A에 대한 PF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만기를 1년 연장하여 부실정리가 지연되었다.

<조치할 사항>

상주농업협동조합은 상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과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정리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히 이행하고, 향후 부실 사업장에 대한 PF대출 만기 도래시 사업성 및 정리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